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05회제1차정례회(2016.06.)

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

검 토 보 고 서



운 영 위 원 회
전문위원 김 용 범

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
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- 구 의 회 사 무 국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6년 6월 2일(木) 마포구청장

3. 운영위원회 회부일자

- 2016년 6월 7일(火)

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
- 지방재정법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5. 예산규모

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증감율(%)
합계	523,533,183	505,849,963	17,703,220	3.5
일반회계	450,981,559	436,389,426	14,592,133	3.4
특별회계	72,571,624	69,460,537	3,111,087	4.3

나. 구의회사무국 조직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증감율(%)
합계	3,303,288	3,288,288	15,000	0.5
일반회계	3,303,288	3,288,288	15,000	0.5

6. 구의사무국 추경예산 편성현황

○ 증액 및 신규사업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구의회 사무국	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	15,000	0	15,000

7. 검토결과

-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구의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3억 328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2억 8,828만 8천원 대비 0.5%에 해당하는 1,500만원이 증가하였음.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의 0.6%에 해당하는 규모임.

-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발생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,
-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중에 속기록 작성에 꼭 필요한 기기로서 속기 녹음시스템의 노후에 따라 그동안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 있었는데, 녹음시스템을 구매하여 의회 회기시 정확한 녹음과 빠른 번문을 실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됨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